

3.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학술 및 연수 교육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전문의의 학술 활동 및 연수교육’ (이하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 심장학 세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주관

교육은 대한소아심장학회의 학술위원회와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 4 조] 교육 회기

1. 교육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각 교육 회기에 대한소아심장학회는 연수 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10 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교육 기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소아심장학회
2.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
3.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인정 학회 및 관련 학회 (별표 1 참조)
4.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승인된 기관 및 단체

[제 6 조] 교육의 인정 범위

1. 대한소아심장학회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및 대한흉부외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 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
 - (2)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인정 학회 및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 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

2.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인정 학회 및 관련 학회는 별도로 정하며 관리위원회는 해당 학회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공지한다. (별표 1 참조)

[제 7 조] 교육의 계획 및 승인

1. 대한소아심장학회 학술 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는 매년 12 월 말까지 별지 제 1 호 및 제 2 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 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단,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연수 교육은 최소한 실시 1 개월 전에 신청하여 대한의사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된 교육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최소한 실시 1 개월 전에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하여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승인된 교육 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및 내용, 일정 및 장소, 인정 평점 등을 공고한다.

[제 8 조] 교육의 등록비

연수 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실시할 때에는 대한소아심장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팩스를 통해서 등록을 받으며, 교육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 대금, 강사료, 식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9 조] 교육 결과 보고

1. 교육 실시 후에 교육책임자는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위원회는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 평점

1. 평점의 인정 범위는 교육 참석과 학술지 논문 게재로 정한다. 교육의 종류는 연수 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정한다.
2. 연수 강좌 및 실습 교육은 대한소아심장학회와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경우 1 시간 당 1 평점을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경우 1 일당 2 평점을 인정한다.
3. 학술대회는 대한소아심장학회와 그 인정 학회 (별표 1)가 주관하는 경우는 1 시간 당 1 평점을 인정한다. 관련 학회가 주관하는 경우는 1 일 당 2 평점을 인정한다.
4. 교육의 참석에 대한 증빙은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KMA 교육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행하는 연수교육 이수 내역 확인서로 한다.

5. 외국 학술대회의 참석에 대한 증빙은 학술대회 참석 확인증(certificate), 학술대회 공식 명찰, 학술대회 등록 영수증(또는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6. 참석한 학술대회에서 구연이나 포스터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발표 1 건 당 1 평점을 추가로 부여하며, 제 1 발표자와 책임 저자는 1 평점을 더 가산해서 부여한다.
7. 학술지 논문 게재에 의한 평점은,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 1 저자 및 책임 저자는 10 평점, 제 2 공저자는 5 평점, 제 3 공저자 이하는 3 평점을 부여한다. 종설과 증례 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를 부여한다.

[제 11 조] 기록의 보관

대한소아심장학회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장은 연수 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칙은 2006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실시된 교육은 이 규칙에 의해 실시된 연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1 차 개정된 규칙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4. 2 차 개정된 규칙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5. 3 차 개정된 규칙은 2019 년 11 월 16 일부터 적용한다.
6. 4 차 개정된 규정은 2020 년 6 월 25 일부터 적용한다.
7. 5 차 개정된 규정은 2021 년 8 월 24 일부터 적용한다.